

건설업법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지난 8월23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도량형도면의 적용 및 산정기준을
도량형도면 기준물의 10배로
상향 조정하고
전원연습기준
토목, 건축, 열에너지분야 분류하는 등
건설업법시행령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 14,358호로 공포되었다.
이날 공포된
건설업법시행령중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협회 진흥과(243-76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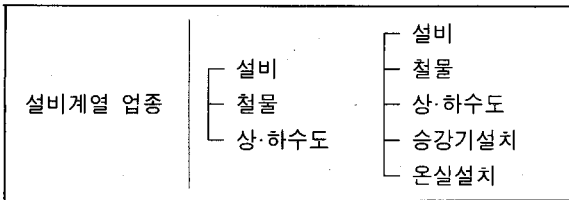
※ 경력 및 기술임원 보유기준

○ 전문건설업	—	→ 폐지
○ 토목 및 건축공사업	2인	→ 1인
○ 토건 및 특수공사업	2인	→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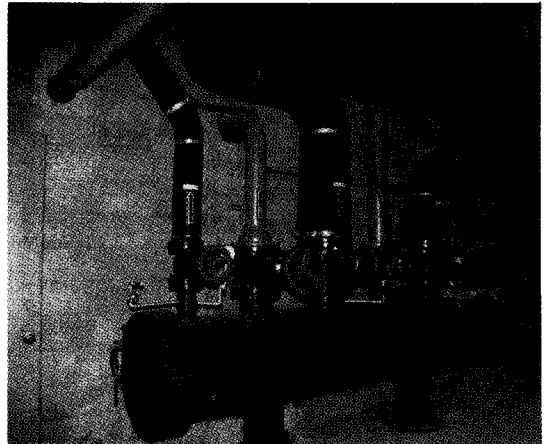
경력임원은 전문경영인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반건설업 및 특수건설업에 한해 두도록 하는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경력임원수를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감축하고, 전문건설업은 이를 폐지한다.

현	행	개	정
제3조(건설기술자의 종류) 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종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한다.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 (생략)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③. ~ ④. (생략) ⑤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2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일 것. 다만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임원중 1인이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자로서 경영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5년이상 영업을 한 자일 것.	(삭 제) 제10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인 경우에는 1인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및 특수건설업인 경우에는 2인 이상을 각각 임원(개인인 경우에는 경영업무담당자로서 지배인으로 등기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둘 것		

※ 전문공사 계열분류 조정



전문건설업의 계열분류는 전문건설업자의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건설업은 토목, 건축, 설비계열로 분류하고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에 한해 2개 업종의 면허를 중복 취득할 수 있다.



(1) 승강기설치공사업 :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분야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 온실설비공사업 : 농림수산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시설채소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전문화가 촉진되도록 별도업종으로 신설한다.

현	행	개	정
제10조의2(같은 계열의 업종) 법 제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같은 계열에 속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케도사업, 포장유지보수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석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2. 건축계열 : 의장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공사업, 철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3. 설비계열 : 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철물공사업 	제10조의2(같은 계열의 업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계열 : 토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케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2. 건축계열 : 의장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3. 설비계열 : 철물공사업, 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 면허기준 조정

건설업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현	행	개	정
제11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① ~ ③(생략) ④ 한 사람이 토목공사업면허와 건축공사업면허를 중복하여 받고자 할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이미 갖춘 면허기준의 활용) ① ~ ③(생략) ④ ----- ----- 받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될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		

[별표 4] 건설업 면허기준중 설비계열 면허기준을 발제한 내용임.

영업의 종류	기술 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시설·장비
설비공사업	1. 건축또는 기계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 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개 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철물공사업	1.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 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이상
		개 인	2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1. 토목 또는 기계분야기술자 1인 이상	법 인	1억원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개 인	2억원 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30제곱미터 이상
승강기 설치공사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	1억원 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개 인	2억원 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온실설치공사업	1. 건축, 농업기계, 원예종묘, 임업종묘 또는 식물보호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 인	1억원 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사무실(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개 인	2억원 이상(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50좌 이상을 포함한다).	

※ 면허갱신기간

건설업면허갱신주기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했다.

현	행	개	정
제13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 등)	제13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 등)	제13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 등)	제13조(건설업면허의 갱신신청 등)
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은 날 또는 면허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60일전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갱신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 ----- ----- ----- -----	① ----- ----- ----- ----- -----
②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전문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

전문건설업체가 수주·시공할 수 있는 소규모복합공사규모를 종전 6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현	행	개	정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제18조(부대공사의 범위 등)
① (생략)	① (생략)	①(현행과 같음)	①(현행과 같음)
②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②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금액이 나머지 부분의 공사금액보다 클 때에는 나머지 부분의 공사는 주된 전문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 본다.	② ----- ----- ----- ----- -----	② ----- ----- ----- ----- -----
③ (생략)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도급한도액의 적용 및 산정기준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실적이 자본금보다 큰 경우 법인은 자본금의 5배에서 10배까지, 개인은 자본금의 2.5배에서 5배까지 확대 조정했다.

실적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엔 자본금을 도급한도액으로 인정하되, 건설업 면허기준상 법인 최저자본금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제22조(도급한도액의 적용)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①~③ 생략
④ 1건의 건설공사가 별표 1의 소분류에 따른 2종 이상의 건설공사로 구성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별표1에 의한 각 건설공사의 소분류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 분야의 2인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 분야의 2인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1건의 건설공사가 일반건설업 또는 특수건설업 분야의 2인이상의 건설업면허를 필요로 하는 복합공사로 발주되는 경우에는 각 건설업면허별로 도급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 등)	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 등)	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 등)	제26조(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 등)
① 생략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5배(개인의 경우에는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과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하 "도급한도액기준금"이라 한다)의 5배(개인의 경우에는 2.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 ----- ----- 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	② ----- ----- ----- 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5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보되, 별표 4의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기준중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도급한도액 기준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도급한도액기준금을 최근 2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으로 보되, 별표 4의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10배(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이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자본금을 도급한도액 기준금으로 본다. 다만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 기준금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도급한도액기준금이 건설업면허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5배(특수건설업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준자본금"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자본금을 도급한도액 기준금으로 본다. 다만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 기준금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경우 도급한도액기준금에 건설업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기준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한 금액을 도급한도액기준금으로 본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94년 1월 7일 개정 공포된 건설업법중 개정법률에 의해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공사종류별로 신설했다.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의 개정안과 균형을 맞추었으

며, 기타 공종은 현행 예산회계법령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된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했다.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물·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로서 하자발생시 공공의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7년으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10년으로 했다.

현행	행	개정
(신설)		제31조의2(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기간
1. 교량	① 경간장 50m이상 또는 연장 500m이상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연장 500m미만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 교량중 ①·②이외의 공종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 터널중 ① 이외의 공종	5년
3. 철물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② ①이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이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 간척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이외의 시설	5년
6. 도로	암기·축구 포함	2년
7. 댐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 ①이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 철근 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 ①이외의 부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 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 이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이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1년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⑫·⑬이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⑮ 포장	2년

※ 의무하도급 공사규모

현행 시행령은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그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89년 이후 공사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의무하도급 공사규모를 5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	행	개	정
제33조의2(공사일부의 하도급등)	제33조의2(공사일부의 하도급등)	①	-----7억원
① 법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중소건설업체의 기술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장기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규모별 배치대상 기술자의 등급을 조정했다.

또한 건설업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 대신 기능사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 3년이상 당해 기술분야 실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0억원 이상 주요시설물 200억원 이상 공사 50억원이상 공사 20억원이상 공사 20억원 미만인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 기술사 기술사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10년 경력자 기술사또는 기사 1급 10년경력자 → 기사 1급 5년 경력자 → 기사 1급 → 기사 2급
기능공 배치 가능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억원 미만의 하도급 공사 2억원 미만의 미장방수, 석공사, 도장, 조적, 창호공사 1억원 미만의 그외 전문공사

현행	개정
<p>제36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p> <p>①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주된 공사종목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p> <p>② (생략)</p> <p>1.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p> <p>2.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자</p> <p>3.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 이상</p> <p>4.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2급 이상</p>	<p>제36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p> <p>① ----- ----- 건설기술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공사금액 20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술사 또는 기사 1급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법 제59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로서 공사금액이 300억원이상의 경우에는 기술사를 배치하여야 한다.</p> <p>2.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1급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p> <p>3.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 기사 1급 이상</p> <p>4.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 : 기사 2급 이상</p>

※ 주요시설물

현행	개정
<p>제55조(주요구조부등) 법 제5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주요구조부 :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p> <p>2. 구조물 : 교량·터널·고가도로·지하도·철도·댐과 항만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로서의 외곽시설</p>	<p>제55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5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고가도로, 지하도, 활주로, 삭도, 댐, 항만시설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계류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 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기타 16층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제외한다.</p>

※ 신설면허와 기존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① 이 영 시행당시의 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이 이 영에 의하여 신설된 건설업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최초로 실시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이 영 시행당시의 비계공사업자와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포장유지보수공사업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1996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이 영 시행당시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건설업인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건설업인 포장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겸업하는 자는 1996년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공사에 해당하는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④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이 영에 의한 새로운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의 실적중 새로 취득한 전문건설업에 속한 건설공사의 실적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 결정을 위한 공사실적의 산정에 합산할 수 있다. (최초 면허 처분 공고일까지 영업 가능)

※ 현장배치 기술자의 경과조치

[부칙 제3조]

이 영 시행당시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제3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공중인 공사는 제36조 제1항 개정(3년 경력자)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배치)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9조관련)

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1호	2월	2,000만원
2.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3회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55조의 규정에 정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이상 포함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2호	4월	4,000만원
3.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2호	3월	3,000만원
4.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4월	4,000만원
5. 법 제22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허위로 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2	2월	2,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50조 제1항 제4호	3월	3,000만원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과 징 금 의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명이상 사망한 때 · 6명이상 9명이하 사망한 때 · 3명이상 5명이하 사망한 때 	8.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4월	4,000만원
		3월	3,000만원
		2월	2,000만원
		3월	3,000만원

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율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의 기 간	과 징 금 의 율 (%)			
			5천만원 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50조 제2항 제1호	8월	16	12	8	4
2. 도급한도액 또는 도급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50조 제2항 제2호	6월	12	9	6	3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포함)한 때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6월	12	9	6	3
4. 일반공사 또는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락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4월	8	6	4	2
5.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4월	8	6	4	2
6.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법 제50조 제2항 제4호	2월	4	3	2	1

비고 : 과징금의 율을 산정함에 있어 도급금액등의 각 구역사이의 해당과징금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다.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 업 정 지 기 간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52조제1항 제2호	6월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1인의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4호	8월
3.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4호	6월
4.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6호	6월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영업정지기간
5. 법 제59조제2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조잡시공으로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	8월
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	6월
7.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	4월
8.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52조제1항 제7호	2월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취소의 요구를 받고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8호	6월

수돗물에 보리차를 끓인뒤 식혀 마셔라.



한국수도연구소는 30일 생수·약수·수돗물의 보관상태를 달리해 음용수 수질기준을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수돗물에 보리차나 옥수수차 또는 결명자차를 일정시간 끓인뒤 냉장보관한 물이라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수돗물은 5분가량만 끓여도 수돗물에서 흔히 검출되는 발암성 물질인 트리할로메탄(THM)이 98%이상 제거된다. 또 낙동강 식수오염사고를 일으킨 벤젠·톨루엔등 농약물질은 20분이상 가열하면 95%가량 없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돗물에 보리차와 같은 차를 넣고 끓이면 차가 구리는 물론 인체에 유해한 크롬·카드뮴등 중금속성분까지 빨아들여 함유량이 낮아졌으며 이같은 현상은 결명자·옥수수차에서도 확인됐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보리차를 넣고 20분동안 끓였을 때 중금속인 구리와 카드뮴의 농도는 각각 0.106ppm, 0.0073ppm으로 보리차를 넣지 않고 같은 시간 끓였을 때의 농도 0.178ppm, 0.0131ppm보다 크게 낮았다.

또 크롬과 수은도 각각 0.0732ppm, 0.0178ppm에서 0.0633ppm, 0.0111ppm으로 줄었다.

이 조사에서는 이와함께 끓인 물을 냉장보관하면 용존산소량(DO)이 증가하고 세균번식을 막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수·약수등에 대한 철저한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등을 비추어 볼때 결국 차와 함께 물을 끓인뒤 식혀 마실 것을 권했다.

연구소는 이와 함께 맛있는 물은 온도·냄새·색깔등과 관계가 있는데 청량감은 체온보다 20~25도 낮은 섭씨 15도에서 가장 잘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